

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

2021년부터 적용
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‘영어능력 검정시험’으로 대체(참고1,2)
 - 대체시험 : 토익(TOEIC), 토플(TOEFL), 텡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플렉스(FLEX)
 -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‘한국사능력 검정시험’으로 대체(참고3)
 - 대체시험 :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
 -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
-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·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접수 불가
- 통신·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

2022년부터 적용

-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(참고4)
-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

기 존	변 경
필 수 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 택 : 전문2과목 + 고교3과목 + 행정학 중 2과목	필 수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문2과목 ※ 선택과목 폐지에 따른 조정점수제 폐지

2023년부터 적용

-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

기 존	변 경 (2023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- 졸업예정자: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(2023년의 경우)	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- <u>졸업자: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</u> - 졸업예정자: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(2023년의 경우)

참고1

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

□ 대상시험 및 점수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	청각장애
토플(TOEFL)		PBT 530점 이상	PBT 352점 이상
		IBT 71점 이상	-
토익(TOEIC)		700점 이상	350점 이상
텡스 (TEPS)	(2018. 5. 12. 이전에 실시된 시험)	625점 이상	375점 이상
	(2018. 5. 12. 이후에 실시된 시험)	340점 이상	204점 이상
지텔프(G-TELP)		Level 2의 65점 이상	-
플렉스(FLEX)		625점 이상	375점 이상

□ 인정범위
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-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·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한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
 - ※ 해당시험 한국 시행사에 외국에서 응시한 성적표를 보내서 공문으로 확인
-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(별첨2) 참조

□ 사전등록

-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 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://gosi.seoul.go.kr>)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함
 - 토익, 텡스, 지텔프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
 - 토플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~10일 등록
 - ※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인 성적은 성적 사전등록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요청 (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질의/응답에 확인글 등록 및 유선(02-3488-2321) 요청)
 - ※ 사전등록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만 등록가능하며,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 이 경과되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
 - ※ 유효기간 만료 후의 성적 중 인사혁신처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은 2021. 2. 1.부터 등록
 - ※ 플렉스(FLEX)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

참고2

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

□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※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

- ① '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인 사람
- ② '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(말소리) 분별력 50% 이하'인 사람

☞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
(舊2·3급으로,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)

☞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
<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>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□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

- 7급 영어 기준점수

시험명	TOEFL(PBT)	TOEIC	TEPS		FLEX
			'18.5.12. 이전시험	'18.5.12. 이후시험	
7급 공채	352	350	375	204	375

□ 제출서류 등 안내

- ① (제출서류) 의사진단서 원본*(의사 소견서 불인정)

*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
- ② 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③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
- (가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①
- (나)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②
 - 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7호)에 따라 검사
- (다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,
-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어음(말소리)분별력이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- ① (신청·제출 : 응시자 → 시·도)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*하고,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(등기)로 제출
 - *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
* 예 : (체크)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
 ※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(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)

- ② (대상 확인 : 시·도 → 응시자)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,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
- ③ (인정기간)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
 -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(신청)하되,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

□ 유의사항 등 안내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됨

참고3

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

□ 기준점수(등급)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(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)

□ 인정범위
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
□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

- 응시원서 접수 시 인증번호·시험일자 등 입력
 -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·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해당 수험생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-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 필요 없음

참고4

지방직 9급 공채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 안내

구분		현행 선택과목	개 편(안) ※ 필수과목
직렬	직류		
행정	일반행정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 행정포함)
	법무행정	· 행정법총론, 민법총칙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민법총칙
	재경	· 경제학개론, 회계원리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경제학개론, 회계원리
	국제통상	· 국제법개론, 경제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국제법개론, 경제학개론
	노동	· 노동법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노동법개론, 행정법총론
	문화홍보	· 문화사, 커뮤니케이션이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문화사, 커뮤니케이션이론
	감사	· 행정법총론, 회계학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회계학
	통계	· 통계학개론, 경제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통계학개론, 경제학개론
	기업행정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 행정포함)
	운수	· 경영학개론, 철도법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경영학개론, 철도법개론
세무	지방세	·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, 행정학개론(지방 행정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 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
교육행정	교육행정	·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
사회복지	사회복지	·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
사서	사서	·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 중 2과목	·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
속기	속기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·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